

우호도시결연 체결 추진 보고

2024. 12.

글로벌도시정책관

1

서울시-델리주 간 우호교류협력 양해각서 재체결 추진

□ 추진개요

- 추진대상 : 인도 델리연방직할지 (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

델리연방직할지 (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

- 명 칭 : 델리연방직할지 (NCT : 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
- 인구/면적 : 약 3,500만명('23) / 1,484km² (서울시 면적의 약 2.5배)
- 행 정 : 인도의 정치적·경제적 수도이며, 11개의 지역으로 구성
 - ※ 델리주지사(Lieutenant Governor) : 비나이 쿠마르 삭세나(Vinai Kumar Saxena) ※ 인도 중앙정부의 임명
 - ※ 델리주총리(Chief Minister) : 아티시 마를레나(Atishi Marlena) ※ 선거에 의한 선출
- 특이사항 : 우리나라 기업 168개 지사(LG전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가 진출하여, 첸나이 다음으로 한국기업 많이 진출한 지역임

- 체결시기 : '25년 중

- 체결방법 : 양 도시 대표(서울시장-델리주총리) 대면 및 직접 서명

□ 우호도시 협약 내용

- 양 도시의 문화적 유대 실현 및 협력 관계 구축하여 교류·협력 강화
- 주요협력분야 : 교통, 문화, 환경, 관광, 행정서비스 등

□ 향후계획

- 서울-델리 간 우호도시 결연 재체결 : '25년 중

붙임 : 협약서 국문(안) 1부

□ 국문본(영문 번역)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와 인도 델리연방직할지 간
우호도시 체결을 위한 양해각서

1) 배경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와 인도 델리연방직할지(이하 “양 당사자” 또는 개별적으로 “당사자”라 한다)는 2018년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상기 명시된 협약은 2018년 9월 14일 처음 발효되었으며 3년간의 협약 기간이 끝난 후 협약에 규정된 대로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 이후 양 당사자는 협약 재체결을 희망하며 다음 사항에 동의한다.

2) 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 (a) 대한민국과 인도의 법률 및 정책과 양국이 체결한 국제협정에 따라 상호존중, 평등 및 호혜에 기초하여 각자의 관할권 범위 내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하며,
- (b) 양 당사자의 담당 부서 간 정기적인 연락을 유지하고,
- (c) 상기 목적을 위해 대표단, 기관 간 교류 및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경험 공유를 포함한 교류를 수행한다.

3) 협력분야

서비스 제공, 행정 서비스, 교통, 주거, 교육, 문화, 스포츠, 인프라, 환경, 공중 보건, 과학 및 기술, 관광, 문화유산 관리, 도시 및 지역 계획 및 본 협약의 목적 내에서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상호 결정한 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지식교류 및 협력을 수행한다.

4) 양 도시의 역할

상기 언급 활동을 이행하기 위해 양 당사자는 아래와 같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I. 델리연방직할지(인도 공화국)의 역할

- (a) 본 협약의 모든 관련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델리연방직할지정부 내 도시개발부의 지원을 요청한다.

- (b) 최고의 전문적, 윤리적 기준에 따라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 (c) 시 차원에서 국제교류 및 협력을 위한 부서를 신설 및 운영한다.
- (d) 상기 부서를 지원하고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
- (e) 활동 관련 워크숍 등의 개최를 지원한다.
- (f)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실시하고 관계자와 협력한다.
- (g) 본 협약에 따라 수행된 다양한 활동에 관한 적절한 기록물 작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관련 홈페이지 업로드를 비롯해, 해당 주 정부, 인도 도시개발부, 외무부 지역담당과(Territorial Divison) 및 외무부, 인도 정부에 연례 보고서를 발송한다. 델리연방직할지는 앞서 언급한 사항을 서울시에 통지한다.
- (h) 우호도시 체결 후 인도 도시개발부 및 외무부에 공식적으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하는 것 외에 시 및 주 정부 홈페이지에 협약서 사본을 게시한다. 델리연방직할지는 이를 서울시에 통지한다.
- (i) 양 당사자 간 서면으로 합의한 기타 특정 역할을 수행한다.

II.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의 역할

- (a) 본 협약의 모든 관련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의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을 요청한다.
- (b) 최고의 전문적, 윤리적 기준에 따라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 (c) 서울시 내 해외 국제협력 담당 부서가 델리연방직할지와의 지자체 차원의 국제교류를 담당한다.
- (d) 상기 부서를 지원하고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
- (e) 활동 관련 워크숍, 해외 연수 프로그램 등의 개최를 지원한다.
- (f)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실시하고 관계자와 협력한다.
- (g) 양 당사자 간 서면으로 합의한 기타 특정 역할을 수행한다.

5) 양 당사자의 공동 의무

양 당사자는

- (a) 본 협약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모든 프로그램, 사업 및 활동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한다.
- (b) 연례 공동 행동 계획, 사업 제안 및 활동계획을 수립한다.
- (c) 교류 및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 자원을 확보한다.
- (d) 공동 행동 계획에 따른 활동의 이행을 위한 재정적 의무의 원칙과 재정적 합의를

수립한다.

- (e) 사업 및 활동의 이행을 위한 국내 이동, 국내 행사 개최, 국제 전문가 기용에 드는 비용과 관련해 양 당사자 간 그러한 재정적 의무를 분담할 원칙을 수립한다.
- (f) 본 협약에 따라 해외 도시 및 지역과의 국제 협력 기회를 공동으로 발굴한다.
- (g) 본 협약에 따라 수반되는 활동에 대해 각국 정부에 주기적으로 보고한다.

6) 법적 준수사항

- (a) 본 협약은 양 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본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양 당사자가 각자의 관할권 법률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 (b) 본 협약은 각 도시에게 자금이나 자원을 지출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선의의 의사를 진술한 것이며 본 협약에서 고려되는 협업과 관련한 참여자들의 전체적인 이해를 명시한다.
- (c) 본 협약과 관련해 인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일반적인 보안 검색 방침을 따라야 하며 비자 및 출입국 허가 역시 해당 정책에 따라 관리된다. 또한 이러한 목적으로 인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의 입국/출국은 일반 비자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7) 협정의 이행

- (a) 양 당사국은 각자의 역량, 권한 및 자원의 범위 내에서 본 협약과 관련한 양 당사자의 상호 만족스러운 이행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 (b) 양 당사자는 본 협약에 따라 이행되는 활동과 관련된 모든 관련 문서 및 자료에 본 협약을 언급함으로써 본 협약을 홍보한다.

8) 협약의 수정

본 협약은 양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

9) 협약 기간 및 종료

본 협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에 발효되며,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최소 삼(03) 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협약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삼(03) 년 동안 효력이 유지되며 이후 갱신할 수 있다. 기존 협약의 종료는 해당 협약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의 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0) 연락 기관

본 협약과 관련한 연락은 다음 부서가 담당한다:

- I. 델리연방직할지(인도 공화국): 델리연방직할지 도시개발부 ACS(보좌관)/사무국장, 델리연방직할지, 델리 사무국, 인드라프라스타 지구, 뉴델리 110002, C동 9층
- II.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글로벌도시정책관,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11) 분쟁 해결

본 협약 또는 그 위반, 해지 또는 무효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논란 또는 청구는 직접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양 당사자 간의 조정 및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한다.

이에 따라 아래 서명인들은 각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증인으로 본 협약에 서명한다.

_____ - 에서 _____ - 년 ____ 월 ____ 일에 서명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인도 델리연방직할지
성명:오세훈 직책:서울특별시장	성명: 아티시(Ms. Atishi) 직책: 델리주총리

2

서울시-쿠알라룸푸르시 간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추진

□ 추진개요

- 추진대상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시 (Kuala Lumpur City Hall)

쿠알라룸푸르시
(Kuala Lumpur City Hall)

- 인구/면적 : 약 207만명('24) / 243km²(서울시 면적의 약 0.4배)
※ 말레이계(48%), 중국계(41%), 인도계(10%), 기타(1%)
- 행 정 : 말레이시아의 수도이자 연방 직할구, 11개의 지역으로 구성
※ 시장: 마이무나 모드 샤리프(Maimunah Mohd Sharif) ※ 국토부 장관이 임명, 3년 임기
- 특이사항
 - 아시아 축구 연맹(AFC) 본부 소재지
 -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Merdeka 118, 679m) 보유

- 체결시기 : '25년 중
- 체결방법 : 양 도시 시장 대면 및 직접 서명

□ 우호도시 협약 내용

- 양 도시의 공동의 이익과 시민의 상호 이해 증진 및 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 강화
- 주요협력분야 : 기후환경, 교통, 스마트시티, 인력개발, 재난대응 등

□ 향후계획

- 서울-쿠알라룸푸르 간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5년 중

붙임 : 협약서 국문(안) 1부

☐ 국문본(영문 번역)

서울특별시와 쿠알라룸푸르시 간
우호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본 양해각서는 2025년 ○○월 ○○일 체결되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시헌장에 의거하여 1946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청으로 출범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을 대표자로 서울시의 행정을 총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 단체로
소재지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이다.

쿠알라룸푸르시는 연방수도법 1960 (Federal Capital Act) [190조] 에 따라
쿠알라룸푸르시장을 대표자로 쿠알라룸푸르시의 행정을 총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로 소재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잘란 라자 라우트 메나라 DBKL 1,
28층 (Level 28, Menara DBKL1, Jalan Raja Laut, 50350, Kuala Lumpur)
이다.

서울특별시와 쿠알라룸푸르시 (이하 “각 도시” 또는 “양 도시”) 는 양 도시의
이해관계에 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의 필요성에 따라 양 도시의 공동의
이익과 양 도시 시민의 상호 이해 증진 및 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 도시
간 협력과 협업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양 도시는 다음 목표하에 우호 도시 관계 체결에 합의한다.

제 1조 목적

양 도시는 본 협약의 조항과 때에 따라서는 각 도시가 속한 국가의 법, 규칙, 규제, 정책에 의거하여 지식, 혁신, 솔루션 및 기술 공유를 목적으로 도시 간 관계 및 제 2조에 명시된 분야의 협력을 활성화하고 강화한다.

제 2조 협력 분야

1. 각 도시는 때에 따라서는 각 도시가 속한 국가에서 해당 주제의 준거법, 규칙, 규제, 정책에 의거하여 지식, 혁신, 솔루션 및 기술을 공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양 도시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다.

- (a) 환경 보호 및 폐기물 관리
- (b) 도시 교통 및 대중교통 관리
- (c) 도시 계획 및 지속 가능한 개발 이니셔티브
- (d) 스마트도시 이니셔티브
- (e) 재난 대응 체계 및 관리
- (f) 전자정부 절차 및 관리
- (g) 역량강화
- (h) 기타 서울시장 및 쿠알라룸푸르시장의 권한 내 양 도시가 상호 간에 합의한 협력 분야

2. 양 도시는 상호 방문, 교류 발전 프로그램 활성화 및 본 조 제 1항에 명시된 협력분야의 모범 사례와 정책을 상호 공유하기로 한다.

제 3조 재정 준비

1. 각 도시는 본 협약의 틀 내에서 착수된 협력 활동과 기금 활용에 대한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2. 본 협약은 양 도시에 어떠한 재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 4조 비밀 유지

1. 각 도시는 본 협약의 시행기간 동안 또는 본 협약에 따라 체결된 타 협약의 이행 기간 동안 본 협약의 협력활동과 각 도시로부터 제공받은 문서, 정보, 기타 자료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2. 본 협약에 따라 취득한 또는 제공받은 문서는 요청 도시가 속한 국가법에 따라 보호된다. 요청 도시는 요청에 명시된 목적에 한해서만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3.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된 문서, 자료 등을 포함한 기밀 정보는 제공 도시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자와 공유되어서는 안 된다.
4. 양 도시는 본 조 조항이 본 협약의 만료나 종료 후에도 존속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제 5조 분쟁 해결

본 협약 내용에 관한 해석상의 차이, 본 협약의 조항 이행 또는 적용에 관한 충돌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 3자 혹은 국제재판소 회부 없이 양 도시 간 직접적인 상호 협의 또는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한다.

제 6조 지식재산권 보호

1. 지식재산권은 각 도시가 속한 국가법, 규칙 및 규제 그리고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가 당사자로 있는 국제 협약에 준거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2. 출판물, 문서 그리고/또는 서류 상의 양 도시의 이름, 로고 그리고/또는 공식 휘장을 해당 도시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상기 제 6조의 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관한 지식재산권이
 - (a) 양 도시가 공동으로 진행했거나 양 도시의 공동의 노력으로 얻은 연구결과일 경우 상호 동의한 조건에 따라 양 도시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b) 각 도시가 단독으로 별도 진행했거나 각 도시의 단독적인 별도의 노력으로 얻은 연구결과일 경우 해당 도시가 단독으로 소유한다.

제 7조 중단

양 도시는 국가 안보, 국익, 공공 질서 또는 공중 보건을 근거로 본 협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협약의 중단은 상대 도시에 서면으로 통지한 직후 효력이 발생된다.

제 8조 수정, 변경 및 개정

1. 양 도시는 본 협약의 전체 혹은 일부 내용의 수정, 변경 또는 개정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2. 양 도시가 합의한 본 협약의 수정, 변경 또는 개정사항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본 협약에 반영되어야 한다.
3. 본 협약의 수정, 변경 또는 개정사항은 양 도시가 결정한 날짜부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4. 본 협약의 수정, 변경 또는 개정사항은 수정, 변경 또는 개정사항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본 협약에 따라 발생한 혹은 기초한 양 도시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9조 협약의 효력

제 3조(재정 준비), 제 4조(비밀 유지), 제 5조(분쟁 해결), 제6조(지식재산권 보호), 제 7조(중단), 제8조(수정, 변경 및 개정) 및 제 10조(협약 개시, 기간 및 종료)를 제외하고 본 협약 내용은 양 도시의 의향서로서의 기능을 하고 양 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 하에 의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의도를 갖지 않고 어떠한 법적 절차를 만들지 않으며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거나 강제력이 있는 의무를 만드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

제 10조 협약 개시, 기간 및 종료

1. 본 협약은 본 협약에 서명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2년간의 유효기간을 갖는다.
2. 본 협약은 양 도시로부터 별도의 결정이 없을 경우 2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3. 본 협약은 양 도시 중 한 도시가 종료 최소 6개월 전 사전 서면통지를 상대

도시에 보냄으로써 종료할 수 있으며 종료되기 전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4. 본 협약의 종료는 본 협약의 종료 이전까지 본 협약에 따라 발생한 또는 기초한 권리와 의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상기 내용은 본 협약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와 쿠알라룸푸르시 간 합의하였음을 의미한다.

본 협약서는 한국어, 말레이어, 그리고 영어로 각 2통씩 체결하며 각각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서울특별시

쿠알라룸푸르시

.....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쿠알라룸푸르시장

마이무나 모하마드 샤리프